

인권의 미래

송지우

우리가 ‘인권’이라 부르는 권리들은 특정한 정치적, 역사적 배경에서 탄생했다. 이 배경은 국제인권규범과 제도를 낳았고, 여타 기본권—가령 헌법상 권리—과 구별되는 인권의 제도적 특성을 규정하고, 인권이 풀어야 할 문제의 성격과 범주를 설정했다. 세계인권선언(1948)과 이후 여러 국제조약을 통해 고도로 발달한 국제인권규범은 전 세계적으로 인종차별, 성차별, 권위주의적 폭정에 맞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권은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어쩌면 유일한 지구정치도덕 규범체계로 자리잡았다.

주요 논의 내용

- 인권의 정치적, 역사적 배경과 이론
- 인권이 직면한 여러 문제 제기과 도전은 무엇인가
- 인권이 미래에도 국제사회의 도덕적 나침반이 될 수 있는가

하지만 인권은 동시에 그 자체가 강대국의 위선적 억압 기제라는 비판과 의심에서 자유로웠던 적이 없다. 이러한 비판과 의심은 20세기 후반 이후 경제 불평등과 정치 갈등이 심화하며 더욱 힘을 얻었고, 이제 논객들은 ‘인권의 위기’와 ‘탈인권시대’를 흔하게 말한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불거지며 2차 세계대전 이후의 국제질서 전체가 도전받으면서, 현 국제질서의 한 축인 인권 역시 생존을 위협받는 듯하다.

인권은 일종의 정치 현상이다. ‘인권’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익숙해진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새로이 확립된 국제질서에서 인권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서이다. 이 새로운 국제질서는 유엔 체제를 중심으로 했고, 평화와 인권을 윤리적 기반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기존 질서와 구별된다. 1948년에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은 신체 온전성과 개인의 기본적 자유, 시민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권리, 정치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권리, 그리고 일련의 사회경제적 권리를 인권으로 선언한다.

이처럼 개인의 이해관심이 국제사회의 소관이 되었다는 것은 인권의 중요한 특징이다. 요컨대 인권은 여러 가지 중요한 인간 이해관심 가운데, 그 이해관심의 충족을 위해 국가, 국제사회와 같은 현대 사회의 주요 행위자들이 제도적으로 조치나 행동을 취하는 게 적절한 경우에 발생한다. 여기서 특히 후자의 요소, 즉 국제적 차원은 인권을 여타 제도적 권리와 구별하는 결정적 특징이다. 이 발상을 요약하는 표현으로 “인권은 국제적 관심사항”(human rights are matters of international concern)이라는 말이 있다. 인권이 우리 시대에 어떤 정치적 역할을 하는지 잘 드러내는 표현이다.

세계인권선언과 이후 여러 국제조약에 명시되는 인권에는 고문 금지, 노예제 금지, 신체의 자유, 인간의 존엄성 존중, 거주와 이전의 자유, 재판상의 권리, 소급 처벌 금지, 사생활 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가정과 혼인의 보호, 아동 보호, 참정권 등의 ‘시민정치권’과 근로의 권리, 근로조건, 노조 결성권, 사회보장 권리, 의식주에 대한 권리, 건강권, 교육의 권리 등의 ‘사회경제권’이 공히 포함된다. 길게 보면, 국제기준으로 통용되는 인권규범은 확장적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새로운 조약이나 여타 규범의 채택으로 새로운 권리가 인권으로 인정되기도 하고, 기존 조약의 조약 기구를 통해 확장적 해석이 적용되기도 한다. 후자의 예로 성적 지향에 근거한 차별의 금지가 있다. 20세기 중반에 채택된 국제인권조약들은 모두 비차별 원칙을 포함하지만, 성적 지향을 별도의 차별 금지 사유로 명시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들 조약의 조약기구들은 조약 해석에 있어서 성적 지향에 근거한 차별 역시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일관되게 보고 있으며, 지금은 이러한 인식이 국제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진 상황이다.

인권 제도가 고도로 발달하고 인권의 언어와 규범이 확산함에 따라 인권에 대한 성찰 그리고 다양한 각도의 비판도 늘어났다. 가령 인권의 보편성에 관한 의구심이 있다. 인권이 보편적 권리라고 흔히 말하지만, 현재 국제기준상 인권으로 인정되는 권리들이 정말 모든 문화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권리들인지, 과도한 문화적 혹은 이데올로기적 편향을 드러내지는 것은 아닌지, 부당하게 서구 중심적이지는 않은지 등의 의문이 제기되고는 한다. 또 인권규범은 사실 위선적이라는 비판도 있다. 인권규범은 사실 선택적으로 적용되어서, 자국 인권상황 때문에 국제적으로 지탄받거나 외교적 압박에 처하는 국가들은 대체로 약소국이고, 강대국은 인권침해를 저질러도 큰 문제없이 지나간다는 의심이다. 최근에는 급기야 국제인권규범이 사실 쓸모없다는 비판도 제기되고는 한다. 인권은 국제법 및 정치 제도 내 중요성에 비해, 정작 급증하는 경제 불평등이나 정치적 불안과 같은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섬세하게 검토할 경우, 세 가지 비판 모두 지나치거나 과장된 면이 있다. 다만 인권의 미래를 전망할 때, 다양한 각도의 비판에서 공히 드러나는 지적 한 가지, 즉 국제인권규범이 구조적 위협에 대응할 역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특히 중요해 보인다. 예를 들어 현재 인권에 대한 가장 심각한 위협 가운데에는 기후 위기가 있다. 기후 위기의 인권 위협은 20세기 중반 국제인권체도가 출현할 당시 널리 인식된 인권 위협은 아니다. 당시 사람들이 주로 생각한 인권 침해는 (통상 국가인) 특정한 가해자와 특정한 피해자가 지목될 수 있는 것이었던 반면, 기후 위기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 짧고 선명한 인과관계를 확립하기는 어려운 유형의 인권 위협이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제인권운동은 창의적인 법리 해석, 환경권과 같은 새로운 권리의 광범위한 인정 등을 통해 기후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노력하는 중이다. 이러한 노력이 실제 성과를 내는지는 인권의 미래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인권의 국제규범화, 즉 모든 인간이 인종, 성별, 출생 신분 등과 상관없이 저마다 동등하게 지니는 기본권이 있으며, 국제사회가 이 권리들의 보호에 역할을 해야 한다는 발상의 확산 및 제도화는 일종의 도덕적 혁신이었다고 할 수 있다. 지금 우리는 주권 존중이 무조건적인 비간섭을 뜻하는 게 아니라, 보편적 인권 존중, 보호 및 실현을 전제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으며, 이는 인류의 긴 역사의 관점에서 봤을 때 획기적인 사실이다.

인권이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한 만큼, 인권에 대한 비판과 회의도 많다. 인권규범이 국가들에 대한 부당한 간섭으로 이어진다면, 인권의 내용이 지나치게 급진적이라는 비판과, 인권규범은 오히려 보수적이고 충분한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비판이 공존한다. 때로는 인권 비판론의 논거가 빈약하고, 때로는 인권규범과 제도의 성과가 불완전한 것이 사실이다. 인권이 우리 시대의 지구정치도덕으로 계속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이러한 불완전성을 개선하여 새로운 위협과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일시
2024년 4월 8일, 오후 7시 30분-9시 30분

장소
두산아트센터 연강홀

*본 강연은 촬영할 수 없습니다.
*강연 후 발송하는 문자 설문에 응답 부탁드립니다.